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 체계 및 허가 신청서류, 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2절)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아래 1절부터 제3절까지 정련, 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나. 허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1조, 제38조)

개정 법률에서 허가서류로 추가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류와 작성내용이 동일한 허가서류를 폐지하는 등 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

다.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명확화(안 제41조)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검

사는 허가 후 1년 내에 실시하고, 이후 검사는 매년 실시토록 하여, 허가 후 첫 정기검사 시기에 대하여 불명확하던 규정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 및 제3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31조(건설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 마. 추가로 제출된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 나.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시설
 - 다. 기상특성
 - 라. 해양특성
 - 마. 수문특성
 - 바. 지질·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시설의 구조물·계통·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여부
 -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구조물
 - 나. 공정설비
 - 다. 계측제어설비
 - 라. 전력설비
 - 마. 공정보조설비

바. 환기설비

사. 화재방호설비

5.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 방사선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책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
의 설명서

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
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
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
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제32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일정
4.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책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38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5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안전운전

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 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 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 다. 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 3.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나.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 다.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 라. 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가. 환경감시
 - 5.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 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 다. 비상시 조치사항
 - 라. 보고 요구사항
-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 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를 말한다

1.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 주요기술자의 약력
4. 그 밖에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3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40조 앞의 “제2절 변환 및 가공사업”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책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규정,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제4호의 경우 책임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에 따른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4조 앞의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삭제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4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제4절(제48조의2)을 삭제한다.

제145조 본문 중 “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를 “법 제18조·제25조·제39조·제39조의8·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제82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보고사항	보고기한
1. (생략)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방출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출량의 3개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	
3. (삭제)	
4. ~ 9. (생략)	

별표 7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의 결과(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마. 영 제55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품질보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년

3.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 는 기록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시설의 검사기록	검사한 때마다	5년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2)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5)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6)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7)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9)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0)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유지관리의 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순시·점검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검사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검사한 때마다	3년
3)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기의 보수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검사한 때마다	3년
마. 정련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 마다	시설을 해체 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 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 할 때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 할 때까지

4.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변환 또는 가공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2)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1주일간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주 1회	10년
3)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5)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6)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7)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8)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9)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0)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1)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총반입량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있어서의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와 운전원의 성명 및 근무교대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의 기록		
1) 시설의 순시 및 점검상황과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시설의 보수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바. 가공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사고후의 조치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5.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핵물질의 기록		
1) 반입·반출·저장·사용·생산 및 손실되는 핵물질의 원산지별·종류별 계량관리에 관련되는 기록	핵물질의 양이 변동된 때마다	10년
2)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작업기록	작업한 때마다	10년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기록		
1) 영 제63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2) 영 제64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의 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핵연료물질의 저장시설·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등의 방사선량률	운전 중 매일 1회	10년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 평균농도	1일간의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평균농도는 매분기 1회	10년
3) 방사성폐기물의 해양방출구에서 1일간 및 3개월간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방출량과 평균농도	1일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매일 1회, 3개월간의 양과 평균농도는	10년

4)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외부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1일간의 방사성물질의 평균농도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체표면의 오염도	매분기 1회 매주 1회	10년
5) 해양방출구 주변 해역의 해수, 해저토, 해양생물 등 해양시료 중의 방사성물질의 종류별 농도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6)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7)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각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1회	5년
8)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9)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	5년
10)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1) 수시출입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5년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인도한 방사선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인도를 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13)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4)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자체처분을 한 때마다	5년
라. 운전기록		
1)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총 반입 및 그 일시	반입한 때마다	1년
2)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온도·압력 및 유량	연속적으로	1년

3)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운전개시 및 운전정지의 시각	운전개시 및 정지한 때마다	1년
4)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상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운전책임자 및 운전종사자의 성명과 근무교대시각	운전개시 및 교대한 때마다	1년
마. 유지관리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 결과와 그 담당자의 성명	매일 1회	1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보수 결과 및 그 담당자의 성명	보수한 때마다	5년
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기록		
1) 사고발생 및 복구일시	사고발생 및 복구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2) 사고의 상황 및 그 조치 내용	수시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3) 사고의 원인	사고가 발생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4) 사고 후의 조치 내용	조치한 때마다	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사. 기상기록		
1) 풍향 및 풍속	연속적으로	10년
2) 대기안정도	연속적으로	10년
3) 강우량	연속적으로	10년
4) 기온	연속적으로	10년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5조 및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단위: 원)

항목	수수료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의 신청	100,000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신청	20,000
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의 신청	100,000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신청	20,000

별지 제4호서식 중 “허가·인가·지정증”을 “허가·인가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35조”를 “제35조·제39조의4”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39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39조의4”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핵연료주기사업”을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43조제1항”를 “제39조의2·제43조제1항”로, 같은 서식 중 “제38조·제43조·제48조”를 “제36조·제42조”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중 “제48조의2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48조의2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시설 종류	[] 정련 [] 변환 [] 가공 []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 목적			
	공사 계획			
	취급하는 핵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예정량, 취득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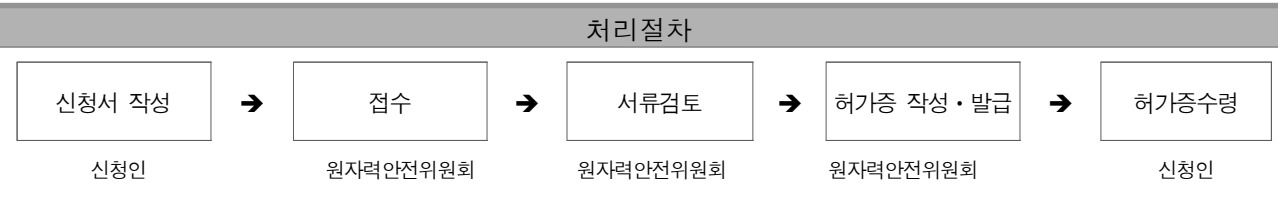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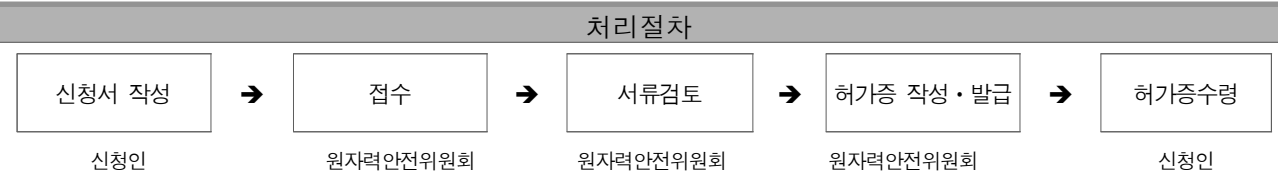
신청내용	시설 종류	[] 정련	[] 변환	[] 가공	[]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의 운영예정 시기				
	생산품목 및 연간예정생산량 (정련 · 변환 · 가공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처리능력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관리규정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핵연료주기시설 ☐ 건설 ☐ 운영 허가증

- 1 . 법 인 명 :
- 2 . 주 소 :
- 3 . 대 표 자 : (생년월일:)
- 4 . 사 업 소 명 :
- 5 . 사 업 장 소 :
- 6 . 허 가 사 항 :
- 7 . 허 가 조 건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1조제6항
☐ 제39조의4제1항 ☐ 제38조제7항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 건설 ☐ 운영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핵연료주기시설 건설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 건설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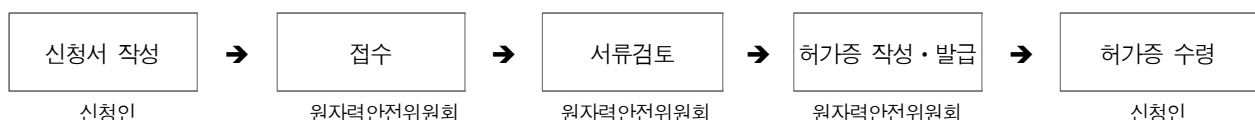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허가증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핵연료주기시설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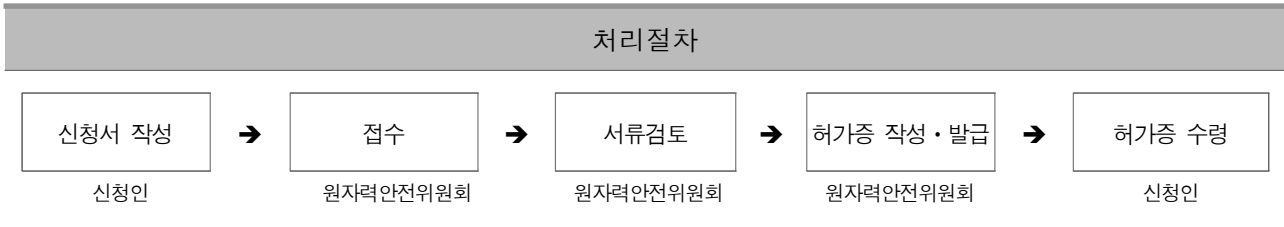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허가증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핵연료주기시설 []정기 []사용전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검사대상시설 및 범위		
	검사를 받으려는 기간		
	운영개시 예정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7조제1항·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1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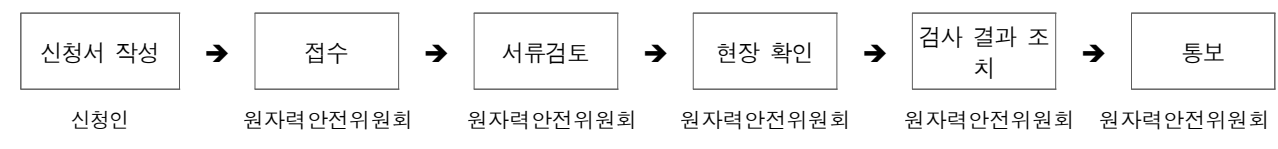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검사대상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나. 시험 및 점검일정표 2. 사용 전 검사 신청의 경우: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u>정련사업</u>	제1절 <u>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u>
제31조(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제31조(건설허가의 신청 등) ①
①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정련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핵물질의 예정생산량	
나. 공사소요 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정련에 필요한 원료구입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정련에 관한 특허권 및 그 밖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 관련 기술능
력에 관한 사항

3. 정련시설의 위치·구조·설
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4. 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
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 정련시설을 관리하는 조
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정련시설에 대한 순시·
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반입·운
반·저장 및 그 밖의 취급
에 관한 사항

라. 정련시설과 관계있는 보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
지의 주요 특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
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
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된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수송 및 군사
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지진 및 지반공학
특성

3. 시설의 구조물·계통·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u>전기록에 관한 사항</u> <u>마. 정련시설과 관계있는 안전에 필요한 사항</u> <u>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u> <u>10. 해체계획서</u> <u>③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u>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u> <u>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가. 구조물</u> <u>나. 공정설비</u> <u>다. 계측제어설비</u> <u>라. 전력설비</u> <u>마. 공정보조설비</u> <u>바. 환기설비</u> <u>사. 화재방호설비</u> <u>5.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u> <u>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u> <u>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u> <u>6. 방사선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u> <u>나. 방사선원</u> <u>다. 방사선 방호설계</u> <u>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u> <u>마. 보건물리계획</u> <u>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	---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책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
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
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
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
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
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
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
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u>제32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u> <u>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u>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u> <u>2. 허가증</u> <u>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u> <u>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한다)</u> <u>⑤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u>제32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u> <u>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u>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u> <u>2. 허가증</u> <u>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u> <u>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	--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3. 정련시설의 공사일정

4. 정련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종류·연간 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5.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일정

4.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책임계 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
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
개월 이내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
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
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
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5조(정기검사)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사업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점검 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

제3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정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품질보증계획서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

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

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38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5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서 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안전운전

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 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 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다. 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3.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다.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라. 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가. 환경감시

5.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다. 비상시 조치사항

라. 보고 요구사항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 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1.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 주요기술자의 약력

4. 그 밖에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39조(준용규정)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2절 변환 및 가공사업 제40조(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삭 제>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가.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변환수량

나. 공사 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변환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취득계획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가공에 관한 특허권 및 그 밖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가공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규정,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라. 그 밖에 가공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방사전환경영향평가서

7.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안전관리규정

가. 가공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가공시설에 대한 순시·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핵물질의 반출·반입·운반·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 가공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4호의 경우 책임계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명서

10. 해체계획서

③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가공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5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에 따른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제42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44조(지정신청 등) ① 영 제61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삭 제>

제44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

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
적에 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
업계획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같은 처
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의 사용후핵연
료의 종류별 예정처리량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
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
도의 제품종류별 예정생산
량

다. 공사소요 자금액과 그 조
달계획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
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
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
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
도의 같은 처리사업에 필

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
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
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
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
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
설의 해체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
야 하는 사항은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
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요한 사용후핵연료물질의
종류별 예정량 및 취득계
획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
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
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사용
후핵연료 처리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사용후핵연료처
리의 기술능력에 관한 사
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
치·구조·설비 및 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
치하는 장소의 기상·해상·
지반·수리 및 지진 등 자연
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 가. 운전상의 과실
 - 나. 기계·장치의 고장
 - 다. 침수·지진 또는 화재등 재해
1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안전관리규정

15. 해체계획서

③ 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조직과 그 기능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3. 안전관리설비의 조작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
5.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그 출입제한 등
6.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
7.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피폭방사선량
 -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
 - 감시 및 오염제거
8.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

사전 측정방법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 반입 · 운반 · 저장 및 그 밖의 취급

12.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13. 배수구 주변수역 등의 방사선관리

14. 비상시 조치

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기록

16.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 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

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6

2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지정증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4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정기검사) ① 법 제35조제

2항 본문 전단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반입 시설
2.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3. 사용후핵연료 처리설비본체
[핫셀(hot cell)을 포함한다]
4. 방사선관리 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6.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7. 제품 저장 시설

8.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9. 비상전원 공급 시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점검일정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지정증”으로 본다.

제4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

<삭 제>

<삭 제>

<삭 제>

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 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

· 제25조 · 제39조 · 제49조 · 제52조제4항 · 제58조 · 제67조 · 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25조 · 제39조 · 제39조의8 · 제49조 · 제52조제4항 · 제58조 · 제67조 · 제82조----- ----- ----- --. ----- ----- ----- 경우----- ----- ----- -----.
---	---